
영상 콘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국내외 의식 수준 비교 연구

이혜경*, 김희완**

Comparisons of the Awareness of Domestic and Foreign Users for Illegal Downloading of Movie Content

Hae-Kyung Rhee*, Hee-Wan Kim**

요약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콘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콘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영상 콘텐츠, 불법복제, 불법 공유, 불법 다운로드

Abstract The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warned about serious problems of piracy due to nearly a quarter of all Internet traffic around the globe was related to Internet piracy. Thus, strong legal action is enforced for piracy over nationally through strengthen the copyright law. We in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see whether netizens prefer to download just for the matter of their convenience. Our study becomes a motivation to consider about seriousness of piracy by comparing between Korea and foreign cases. To our surprise, the survey reveals that Korean netizens conspicuously aware of their downloading behaviors outpaces Canadian netizens. Canada lacks the basic protections for the digital environment and is a safe haven for Internet pirates.

Key Words : Movie Piracy, Illegal Downloading, Awareness Level of Piracy

1. 서론

1.1 배경

국내 콘텐츠 산업은 매년 빠른 추세로 성장해 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 산업 “2011년 결산 및 2012년 전망”보고서[1]에 따르면 2011년도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매출액과 수출액은

82조 6146 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2012년은 내수경기위축, 유럽 재정위기, 세계 경제 불확실성들의 거시적인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수요, 공급 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추세가 예상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 성장과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해결을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부교수 (제1저자)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9월 4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0월 10일

적당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영화계가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은 8684억 원에 이르며, 이는 역대 한국영화 가운데 최대 제작비(280억 원)를 들인 ‘마이웨이’를 31편이나 제작하고도 남는 규모로서 지난해 영화관 수익 1조 2362억 원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일자리도 빼앗아 갔다. 영화계에서는 1만 349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세수(稅收)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콘텐츠 산업 분야는 영화가 366억 원으로 제일 컸다[2].

하지만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민의 대대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지난해 저작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 17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해 이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9.3%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61.6%만이 ‘그렇다’고 답해 불법복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나타났다[3]. 지난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저작권 침해는 P2P 웹하드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침해대상은 영상 콘텐츠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복제 경로는 P2P 44.8%, 웹하드 43.4%순이었다[4].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2011년 2월 인터넷 수송량의 23.8%가 불법 복제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5]. MPAA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지붕 꼭대기에 와있다고 발표하였다. NBC 유니버설과 Envisional에 의해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인터넷 교통량의 약 1/4에 가까운 수치가 불법복제와 관련 있다고 한다. 비록 이 연구발표의 결과대로라면 불법복제의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인 경우 음악 저작물의 경우 iTunes 또는 Amazon VOD 등을 통해 음악을 합법적으로 접할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영상 콘텐츠보다는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외국에서도 영상 콘텐츠인 경우 그 심각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목적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 잉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미친 손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져 그 피해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불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저작권 교육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찾아

가는 저작권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동일 설문을 기준으로 양국간의 의식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 ‘콘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연구’[6]에서 활용되었던 온라인 설문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사용에 관한 사용자 의식 조사”를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똑 같은 설문으로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일한 질문 하에서 양국 청소년들의 영상물 불법 복제에 대한 의식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의 주제인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의 의식 수준 비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유럽의 불법복제 방지 정책을 소개하고 간단한 사례를 통해 불법복제 의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이미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세계 각국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중국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저작권 법률, 법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으며, 중국경제가 세계경제권에 들어오면서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 복제는 더 이상 외부에 감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다[7]. 미국의 저작권 보호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IPA)에 따르면 미국이 2009년에만 중국에서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3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우리나라 영화 “해운대” 또한 중국에서 개봉된 후 일주일 만에 불법 복제판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1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이 영상 콘텐츠의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좋은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중국의 외화 수입 제한 정책으로 인해 좋은 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복제는 각 나라

의 유명한 영화들을 손쉽게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WTO 가입 이전에는 미국은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이전과는 달리 전면적으로 중국의 불법 복제에 관해 제재를 가한다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불법 복제 천국’으로 악명 높은 중국도 2007년 11월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07 중국 국제문화 창조산업 박람회(이하 문화박람회)의 중국 창조자원 고위급 국제 판권 논단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불법복제가 중국 창조산업에 미치는 직접 손실이 100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 범위가 국내 제작 영상물에서 수입 영상물로 넓어져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가 시급한 상태이다[8].

베이징 중국TV 광전연합 문화발전유한공사 이사장 후치밍(胡其鳴)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불법 복제 CD를 통해 자신의 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중국 영화시장의 규모를 28억3천만 위안으로 할 때 불법복제가 없을 경우 흥행 실적이 4배 규모인 113억 위안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경제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므로 불법 복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인구도 많고 국토면적이 넓어서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2.2 미국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모호한 기준의 처벌로 인해 저작권 보호를 넘어섬으로써 콘텐츠 이용자들이 콘텐츠 사용에 위축감을 느끼는 부작용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불법 업로드에게 사후 통보 만으로 불법 업로드 된 콘텐츠를 삭제하면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면책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종합적인 저작권 법제의 근간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저작권 보호와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적 이익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의 통지/삭제 제도는 서비스제공자의 성장만 도왔을 뿐 저작권 침해 방지 목적에는 비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서비스업계 자체적으로 DCMA를 기반으로 삼진아웃제, 저작권 필터링, 경고 등을 통해 불법 영상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

고 있다[9].

업로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해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 피해를 방지하면서 수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한 예로 Myface는 MTV 방송과 제휴하여 자사 사이트에 MTV 영상이 업로드될 경우 이를 탐지하여 식별 한 후 광고를 삽입하여 저작권 침해없이 이용자의 콘텐츠 업로드를 지원하고 광고를 통한 수익도 얻는 윈윈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합법적인 구매 유도로 콘텐츠 이용 및 수익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6].

2.3 일본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2010년 시행되는 저작권법에는 사적인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에는 음악 또는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다[5]. 이전에는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에 해당되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적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 콘텐츠의 해외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불법 다운로드 실체를 이제 확인만 하고 있는 단계로, 자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 복제에 관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서 휴대폰의 통화 연결음이나 비디오, 음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마련하였다[7]. 이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콘텐츠의 업로드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도 금지함으로써 영상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2.4 독일의 불법복제 의식 수준

독일 경찰은 2011년 6월 8일 독일어권 최대규모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Kino.to를 폐쇄하고 관련자 1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10]. [그림 1]은 단속하기 전 Kino.to의 메인 화면이고 [그림 2]는 단속 후 Kino.to에 접속하면 뜨는 화면이다.



[그림 1] Kino.to 메인 화면



[그림 2] 단속 후 Kino.to 에 접속하면 뜨는 메인 화면

[그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접속한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되었습니다. Kino.to 운영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불법 복제하여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Kino.to 는 직접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버들과 파일 호스트들의 링크를 모아놓은 사이트였다. 66,000명이 넘는 영화와 300,000편이 넘는 TV 시리즈 물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던 이 사이트의 연간 수익은 백만 유로가 넘었으며 하루 이용자수는 4백만 명에 이르렀다 한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조치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단속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독일 정부의 엄격한 규제정책은 매우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 각종 불법 다운로드방식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3월 라이프찌히 법원은 수년간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Kino.to 에 업로드했다는 명목으로 29세 프로그래머에게 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으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스트리밍 되는 영상을 저장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즉 Kino.to 의 운영자와 업로더들은 처벌을 받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받고 싶으나,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또 다른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 소비자조사 연구발표에 따르면 독일 내 인터넷 사용자 중 약 7%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에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작품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바 있고, 24%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을 Kino.to 와 같은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2.5 그 밖의 해외 불법복제 의식 수준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의 불법 복제 소비국인 멕시코는 영화 들이 개봉한 지 24시간 이내에 녹화 복제되어 인터넷으로 전송되고, 각국의 해적판 DVD유통업자들이 이를 DVD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런 불법 복제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적잖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멕시코 음원 및 영상제작자(Amprofon)가 시장조사기관(Ipsos Bimsa)에 의뢰해 실시한 불법 다운로드 실태조사 결과 2008년도 불법 콘텐츠 판매는 80% 이상 증가했으며, 그 규모는 정상 시장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영상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의 증가는 인터넷보급이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브로드밴드 사용인구의 증가가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의 비중이 음악에서 점차 영상 콘텐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는 아직까지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직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국민 의식이 적으며, 원본 콘텐츠의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화 DVD원본은 20달러가 넘는 반면 불법 복제품은 1달러 정도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도 불법복제 천국이라 불리고 있다. 파키스탄 불법복제 업체들이 대거 진입함에 따라 세계 최대 불법복제국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5개의 중대형공장에서 콘텐츠를 하루 4만 5천장 이상 불법복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1]. 방글라데시는 WTO TRIPS 가입국이자 WIPO회원국임에도 정부차원에서 불법복제 단속과 처벌 의지가 약하고 저작권법이 있지만 처벌 내용이 매우 약한 수준이다. 파키스탄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방글

라테시가 불법복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중대형 불법복제 업체의 주인은 대부분 파키스탄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불법복제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단속이 쉽지 않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희박하여 불법복제가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꾸준한 단속으로 CD/DVD 가격이 인상되면서 불법복제가 위법임을 인식하는 국민 의식수준이 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영상 콘텐츠 불법복제 의식조사 방법

영상 콘텐츠의 불법 사용은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수치화 되어 발표됨과 같이 지속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다. 비단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상 콘텐츠의 불법 사용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불법 복제로 인해 산업 피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가 되어 화제가 되었다. 아직까지 외국에서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수치화 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사용에 관한 사용자 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실제 정량적인 불법 복제에 관한 수치는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식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설문 내용은 이미 국내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함으로써 외국의 의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설문에 대해 양국의 의식수준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7일 이틀간 온라인 설문 사이트 ‘월드 서베이’의 온라인 회원들에게 조사한 설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캐나다 대학생들 205명에게 영상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3일부터 2월 10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캐나다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분석하고, 아울러 두 나라의 의식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설문 대상자는 일반적인 전체 연령대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통상적으로 대학생들이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이용에도 익숙하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면대면 설문지 조사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성실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비해 번거롭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 직접 설문대상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보다 진정성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전체 설문지는 국내외 영상 콘텐츠의 불법 사용에 관한 통계학적 문항 3개와 불법 감상이 위법인지 여부에 관한 의식 실태에 대한 문항 4개와 사용자 의식 개선 관련 문항 3개와 기타 2개 문항 등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감상한 경험이 있느냐 문항에 전체 응답자 205명 중 단 3명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98%는 빈도 수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으로 감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94%가 월 1회 이상 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법 감상한 영상 콘텐츠의 종류로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약 40%로 제일 많았고 TV드라마나 국내영화가 각각 26%,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감상하기 위한 경로로 스트리밍 서버가 전체 응답자의 61%가 이용하고 있었고, P2P와 웹하드 서비스 방식이 15%대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추세는 스트리밍 서버 방식이 보편화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불법 감상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83건 중 110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모두 87건을 차지하였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인터넷의 편리함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의 시장은 앞으로 영화관보다는 인터넷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함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한 이용확대가 주목된다.

영상 콘텐츠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감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감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7%의 응답자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감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불법 복제로 인한 영상 콘텐츠 감상이 위법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 43%가 결코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57%만이 위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품 영상 콘텐츠 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7%가 가격인하를 선택하였고 이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개선과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강력한 법적 제재 방법은 45%만이 응답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는 선도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품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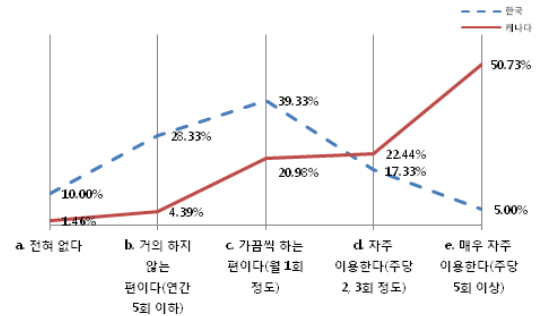
상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한 것이 현실인데, 현재의 가격보다도 더 저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아직도 영상 콘텐츠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강력한 법제도가 도입되고 해도 불법 영상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였고, 특히 그때부터는 절대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28%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들은 이미 불법 영상 콘텐츠의 이용이 불법임을 인식하는 의식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동시에 홍보가 병행된다면 영상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가 개선되리라 예측된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영상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응답자의 98.5%가 이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보편화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경로로는 스트리밍 서버가 차지하였다. 불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는 92%의 응답자가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개선의식 수준 면에서는 83%의 응답자가 의식 개선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응답자의 43%인 88명이 불법 다운로드가 위법임을 의식하지 않았다. 정품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격인하를 지적함으로써 정품 영상 콘텐츠의 가격이 적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정품 영상 콘텐츠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3.1 영상 콘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캐나다 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만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은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그림 3]은 동일한 설문 내용으로 국내에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설문 응답자 총 205명 중 1.26%에 해당하는 3명만이 전혀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감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98.7%가 빈도수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1회 이상 인 경우가 전체의 94%를 나타내어서 적어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 월 1번 이상은 불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었다.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캐나다 학생들은 불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는 횟수가 한국인에 비해 많았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대학생들은 응답자의 약 94%가 월 1회 이상 불법 영상물을 접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약 62%로 32%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이한 점은 캐나다인 경우 이용 빈도수와 이용자들의 분포가 비례되었으나, 한국인 경우 월 1회 이용을 정점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아감에 따라 사용자들 수가 감소되는 대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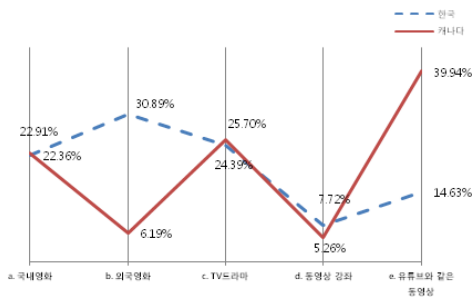


[그림 3] 영상 콘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3.2 불법 감상 영상 콘텐츠의 종류별 선호도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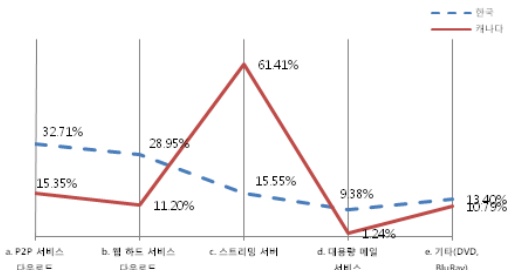
캐나다 학생들은 비용을 지불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감상하는 영상 콘텐츠의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예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에 39.94%로 제일 높았으며, TV드라마가 25.7%, 국내영화가 22.91%로 응답하였다. 이 설문 문항은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205명의 응답자로 323건의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1인 당 1.58개 이상의 종류를 선호하는 결과이다. 동영상 강좌 콘텐츠인 경우 모두 약 5.26%로 나타났고, 사용자들이 대부분 영화를 선호하였다. 유튜브인 경우 205명 중 129명이 응답하여 세 명 중 두 명은 선호한다고 할 수 있었다.

한국인 들은 주로 국 내외 영화나 TV드라마를 주로 불법으로 이용한 반면 캐나다 학생들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제일 많이 불법으로 이용하였다. [그림 4]에서와 같이 TV드라마는 25%대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들이 캐나다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감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영상 콘텐츠의 종류별 선호도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3.3 불법 영상 콘텐츠 유통 경로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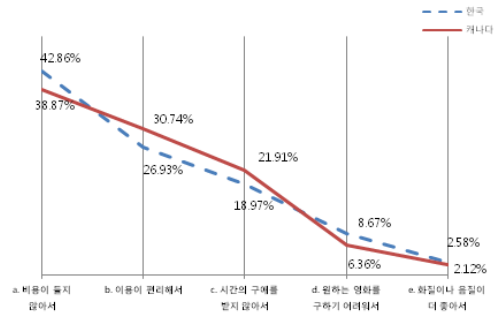
[그림 5] 불법 영상 콘텐츠 유통 경로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응답자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캐나다 학생 전체의 241건의 응답 중 129건으로 약 2/3에 해당하는 61.41%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나머지 P2P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 그리고 기타의 방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서버의 서비스 성능 향상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고 동영상 파일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인 스트리밍 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에서 실시한 설문보다 3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캐나다 대학생들은 응답자의 2/3가 스트리밍 서버를 불법 영상 콘텐츠 유통경로로 이용하였다. 서버의 성능 향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대신 스트리밍 서버를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듯하다.

3.4 사용자 불법 콘텐츠 이용 사유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상 콘텐

츠를 감상하는 이유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과 캐나다 학생들의 이용 사유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캐나다 학생들이 전체 응답건수의 38.87%인 110건이 비용이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고 한국인들도 42.8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캐나다 학생들은 복수 응답을 허용한 상태에서 모두 283건의 응답자 중 53%인 149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들도 약 46%를 차지하였고 이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양국 모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모두 10% 미만으로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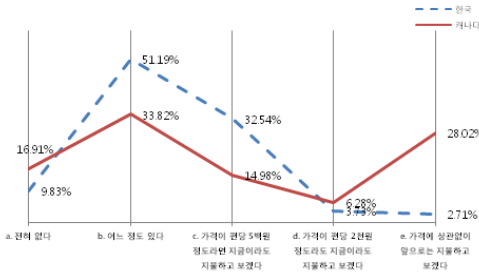


[그림 6] 사용자 불법 콘텐츠 이용 사유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3.5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한 영상콘텐츠 사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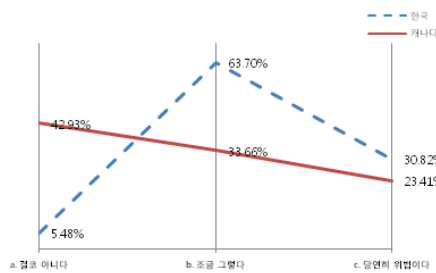
영상컨텐츠를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감상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캐나다는 전체의 83% 정도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감상하겠다고 하였다. [그림 7]에 의하면 반면 한국인들은 응답자의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캐나다는 17%정도인데 한국인들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더욱 대비되는 현상은 캐나다 학생의 28%가 가격에 상관없이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3% 미만만이 응답함으로써 현저한 의식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해 단속 강화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책정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보호에 관련된 불법복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그림 7]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한 영상콘텐츠 사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3.6 영상콘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위법행위 인가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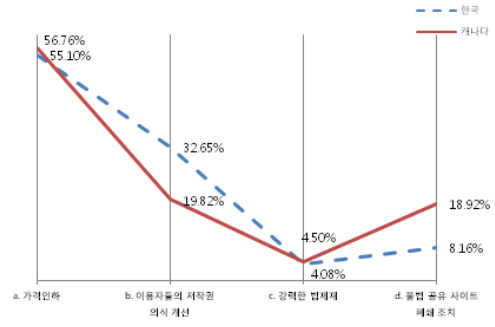
[그림 8] 영상콘텐츠 무단 복제에 대한 위법행위 의식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영상콘텐츠 무단 복제에 대해 위법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한국과 캐나다의 의식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캐나다학생들은 약 43%가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답한 반면 한국인들은 약 55%만이 결코 위법이 아니라는 답을 함으로써 양국의 의식이 크게 차이 남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위법이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도 한국인들은 31%가 답한 반면 캐나다 학생들은 23%만이 답을 함으로써 한국보다 캐나다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홍보부족 및 교육결여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사회 일부에서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나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무단 복제가 왜 위법인가 하는 논란도 있기는 하나, 본 의식 구조 설문 결과에 의하면 당연히 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응답자가 영상 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단 복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된다.

3.7 정품 영상콘텐츠 사용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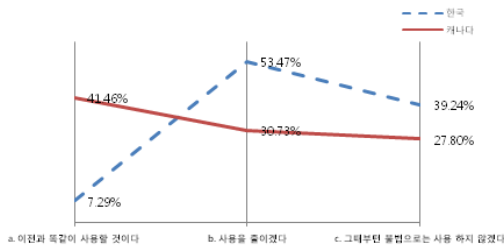
[그림 9]에서와 같이 캐나다 학생들 복수 응답자 222명 중 응답자의 약 57%인 126명이 정품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 비슷하게 55%가 가격인하에 답하였다. 캐나다학생 23%에 해당하는 52명이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 및 강력한 법적 제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인들은 약 13%가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두 나라 모두 강력한 제재보다는 콘텐츠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정품 영상콘텐츠 사용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3.8 강력한 법 제재 도입 시 불법 복제 영상콘텐츠 계속 이용 여부 관점에서 본 의식 수준

[그림 10]과 같이 캐나다 응답자 205명 중 85명이 이전과 같이 똑같이 불법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의 약 41%에 해당되는 수치로 5명 중 2명이 불법복제에 대해 법적 제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제재의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3명 중 1명만이 영상콘텐츠 불법 복제가 위법이라는 의식을 나타낸 상태에서 사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고, 28%인 57명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응답자들은 약 93%의 응답자들이 사용을 줄이든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캐나다보다 강력한 법 제재 도입 시 불법을 자제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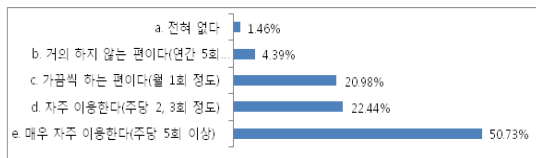
[그림 10] 정품 영상콘텐츠 사용시 선행되어야 할 것 관점에서 본 의식 한국과 캐나다 비교

3.9 설문조사 결과

SURVEY

1. Have you ever watched media (movie, TV clips, video, Youtube) through internet without paying money?

- a. Never
- b. almost never (less than 5 times a year)
- c. few times (once a month)
- d. often (2 or 3 times a week)
- e. very often (more than 5 times a week)



2. Without paying, which type of media do you watch?

- a. Hollywood movie
- b. foreign movie
- c. TV drama/shows
- d. online lecture
- e. internet sites such as Youtube

영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사용에 관한 사용자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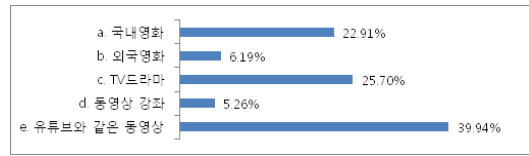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12.1.3. ~ 2012.2.10.

분 류 : 컴퓨터/인터넷

문 항 수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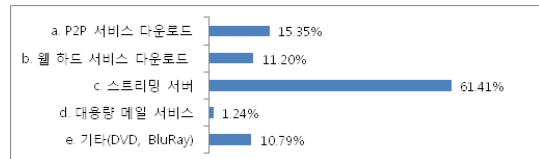
응 답 수 : 205 명

대 상 자 : Canada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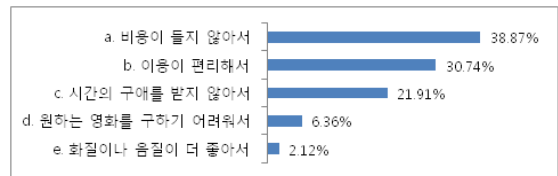
3. If you have watched media without paying, how did you download it?

- a. P2P service download
- b. web hard service download
- c. streaming server
- d. mail service
- e. others (DVD,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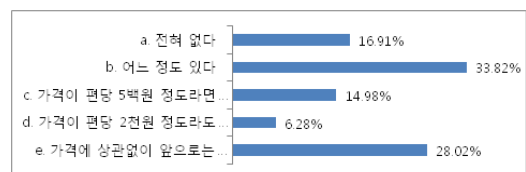
4. Why do/did you watch without paying?

- a. because it didn't require payment
- b. because it is convenient
- c. because it is accessible anytime
- d. because it is hard to find the movie elsewhere
- e. because quality is b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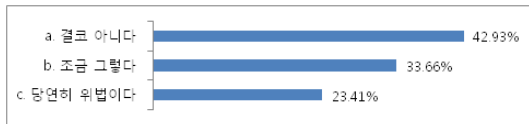
5. Are you willing to watch media legally with payment?

- a. never
- b. maybe
- c. Yes, if the payment is less than \$1.00
- d. yes, if the payment is about \$2.00
- e. yes, absolu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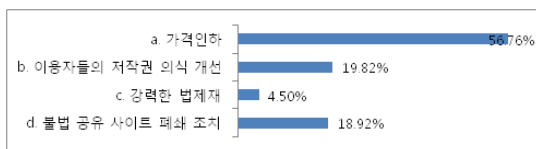
6. Do you think watching media without payment is illegal?

- a. No
- b. maybe
- c. Yes, of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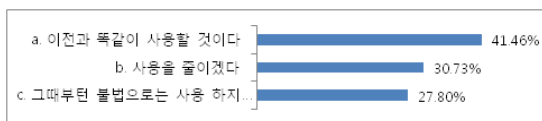
7. What kind of action should be taken in order for people to download legal product?

- a. reducing the price
- b. teach/educate users about copyright
- c. enforce a strict law
- d. closing down illegal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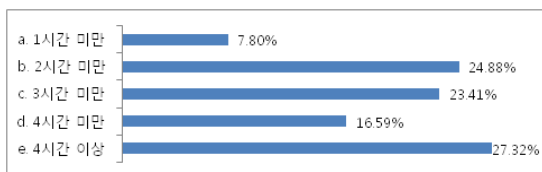
8. Regardless of strict law against illegal downloads, would you continue to watch illegal products?

- a. Yes, I will continue to watch illegal product.
- b. I will reduce the use of illegal sites.
- c. No, when the law is enforced.



9. How long do you use internet a day?

- a. less than an hour
- b. less than 2 hours
- c. less than 3 hours
- d. less than 4 hours
- e. more than 4 hours



10. Have you ever used other person's ID to watch illegal media?

- a. Yes
- b. No



11. If you said Yes in #10, which age group do you belong to?

- a. 10s
- b. 20s
- c. 30s
- d. 40s- 50s
- e. 60s



4. 의식조사 결과 분석

4.1 영상 콘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 및 유통 경로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캐나다에서 각각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양국의 의식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영상 콘텐츠의 불법 감상은 생각 이상의 심각한 수준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 콘텐츠 불법 사용 빈도수가 한국에 비해 캐나다가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됨에 따라 양국의 저작권법 규제에 관한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주당 5회 이상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한국에 비해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나, 이는 불법 다운로드의 시장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 같은 경우 영화 산업에서 불법 복제로 인해 한해 200억불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별 의식 없이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영상 콘텐츠 유통 경로로 한국은 3명 중 1명이 P2P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캐나다인 경우 3명 중 2명이 스트리밍 서버를 사용하였다. 한국은 P2P방식과 아울러 웹 하드 서비스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메일로 파일을 업로드하기엔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일 호스팅”방법으로 파일을 업로드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는 설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다운로드 방식보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보하리라 예상된다. 스트리밍 방식은 가격도 저렴하며 또한 다운로드 방식보다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작권 침해가 이 방법을 통해 진행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4.2 영상 콘텐츠의 합법적 감상 유도 가능성

영상 콘텐츠의 불법 복제 상황과 앞으로의 개선 여지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캐나다와 한국 모두 거의 동일한 분포로 주로 불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유가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품 영상 콘텐츠 사용에 대한 가격 인하가 조정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로 개인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모두 정부의 합법적 이용 유도 방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상습 해비 업로더를 감시한다든지, 합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상에서의 합법적인 유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이트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우수 사이트를 클린 사이트로 지정해 이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의식 조사 시사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은 온라인의 첨단화와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 영상물 불법복제가 점점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발 맞추어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23일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상습 게시하는 해비 업로더와 이에 편의와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를 신설하여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사람에게 문화관광부 장관이 경고 또는 삭제 명령을 내리고, 세 번째로 적발된 경우 사용자 계정과 게시판을 최장 6개월 정지시키고 있다. 아직 불법복제 기준이 변경되거나 강화되지는 않았으나 개정법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에서 정한 침해사례가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저작권법의 범위와 침해 기준이 폭 넓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Havocscope black markets on line database of black market activities 는 2012년 현재 콘텐츠 불법 유통국가의 순위와 그 규모를 발표하였다[12]. 불법유통 시장의 세계 총 규모는 193경 달러에 이르고 국가 당 평균은 약 210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한다. 1위부터 11위까지 순위는 다음과 같다.

United States	\$620.63 Billion
China	\$261 Billion
Mexico	\$126.08 Billion
Spain	\$123.59 Billion
Italy	\$111.05 Billion
Japan	\$108.3 Billion
Canada	\$77.83 Billion
United Kingdom	\$59.66 Billion
Russia	\$49.04 Billion
Germany	\$39.67 Billion
South Korea	\$26.2 Billion

위의 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시장 규모보다 약 3배나 더 큰 규모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는 캐나다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학교 내의 작은 표본이었지만 위의 순위와 무관한 결과는 아니었음을 증명하였다.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가 2010년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 중국, 멕시코, 러시아, 그리고 스페인이 주요 불법복제 감시국 목록에 포함된다고 발표하였다[13]. MPAA의 사장이

자 임시 CEO인 Bob Pisano에 의하면 위 5개 국가들이 IAPC(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의 2010 불법복제 5대 감시국 목록에 들어있다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IAPC는 국제적인 불법복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이들 5개국은 저작권 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미국 영화, 텔레비전 산업에 종사하는 2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41조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들은 의상 디자이너, 트럭운전사, 무대 장치자, 배우, 건축가, 감독, 그리고 행정전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이 IP도둑 들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시장은 영화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힘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활력소라 할 수 있다.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13조 6천만 달러의 무역손해를 입고 있다. 위의 5개 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 수준의 불법복제는 어느 국가든 경제 성장에 손해를 입히는 수준이다. 온라인 도둑에 대한 징벌 증가는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해 효과적인 입법부의 해결책이 모든 정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전자 시장에서 창조적인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 상에서의 위법행위는 전 세계의 창조적 산업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전자적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인터넷 불법복제의 안전한 인식처가 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인터넷 조약을 실현하기 위해 캐나다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 위반에 대해 기를 꺾기 위해 ISP의 역할을 청렴 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정당한 전자 산업을 추진하는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인터넷 불법복제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스페인 작품제작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현재 스페인의 광적인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세계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스페인 정부의 불법복제 방지 관련 입법조치가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창조적 작품 제작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부의 강력한 정치제도에 달려있다.

6. 결론

MPAA가 지난해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콘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의 불법 유통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는 세계11위인 반면 캐나다는 7위로서 세계에서 주목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각 나라마다 국제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서 입법 및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중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불법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대한 의식 수준을 설문을 통해 조사해 봄으로써 영상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연구보고서(2012), 2012년 콘텐츠산업 전망 II편-세부산업편-2011년 결산 및 2012년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 [2] 정상철(2010),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부
- [3] dongA.com뉴스(2012), 불법 다운로드가 ‘마이웨이’ 31편을 날렸다, 동아일보
- [4]<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7>
- [5]<http://www.digital-digest.com/news-62881-238-Internet-Traffic-Related-To-Piracy-But-MPAA-Miss-es-The-Real-Message.html>

- [6] 이혜경, 김희완(2009), 영상 콘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권 (11호), 212-224
- [7] 이지현(2008), 중국의 영화산업 발전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8]http://china.naeil.com/news/news_view.asp?nnum=13655
- [9] 김성우, 김진욱(2009),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반응과 해외 동향, KT경제경영연구소
- [10] 해외통신원(2011), (독일)[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대대적 단속에 나선 독일, 한류 콘텐츠는?, 방송통신위원회 <http://blog.daum.net/kcc1335/3564>,
- [11] 권경무(2007), 방글라데시 불법복제 천국, KOTRA 글로벌윈도우
- [12] <http://www.havocscope.com/products/ranking/>
- [13]<http://www.deadline.com/?s=Canada%2C+China%2C+Mexico%2C+Russia+And+Spain+Top+MPAA+Watch+List+For+Content+Theft>

이 혜 경



- 1979년 2월: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1985년 4월: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전산학과 석사
- 2000년 2월: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박사
- 1988년 3월~1989년 2월: 국립천안공업전문대학 전자계산과 전임강사
- 1992년 3월~2001년 8월: 경인여자대학 멀티미디어정보전산학부 조교수
- 2001년 9월~현재: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부교수
-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보안, 동시성제어
- E-Mail: leehk@ysc.ac.kr

김 희 완



- 1995.8: 성균관대학교 공학석사(정보공학)
- 2002.2: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컴퓨터공학)
-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 2001.3~현재: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 관심분야: 정보시스템 감리,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 E-Mail: hwkim@syu.ac.kr